

#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 - 검 토 보 고 -

### 제안이유

-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충남도민체전에 따른 공설운동장 종합 정비 계획과 공주산업과학대학 이전으로 인한 대학주변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진입으로의 추가 확보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도시 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입안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1.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의 조서와 사유서

##### 가. 도로

######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6	20	보조 간선 도로	748	중로 1-5	8호 광장	일반 도로	운동장		

## ■ 도로(신설)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중로 1-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B = 20m</li> <li>◦ L = 74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과학대학의 이전과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대학 주변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진입로의 추가 확보와 남부순환도로에 의해 분리된 대학과 운동장을 연계하여 운동장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중로1-5호선~8호 광장간 도로 신설</li> </ul>

## 나. 광장

### (1) 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광장	교차점 광장	대1-2와 대3-2, 중2-3호선과의 교차점 (2중트럼펫형)	52,000	감) 146	51,854	충고 56 ('97.4.23)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8	교차점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li> <li>◦ 면적 : 52,000m<sup>2</sup>→51,854m<sup>2</sup></li> <li>◦ 감) 146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동장시설의 확장으로 인한 광장시설 일부 면적 축소</li> </ul>

## 다. 운동장

## (1) 운동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m^2$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운동장	공설 운동장	예산읍 향천리 258번지 일 대	98,429	감)3,294	95,135	충고 108 ('88.5.12)	
①	경기장				26,659	증)1,090	27,749		
②	실내체육관				20,502	감)14,050	6,452		
③	테니스장				1,431	증)2,217	3,648		
④	주차장				7,447	증)11,451	18,898		
⑤	화장실				119	증) 339	458		
⑥	도로및광장				42,271	감)32,802	9,469		
⑦	운동시설지				-	증)13,232	13,232		
⑧	녹지 및 기타				-	증)15,229	15,229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li> <li>• 면적 : <math>98,429m^2 \rightarrow 95,135m^2</math> 감) <math>3,294m^2</math></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5회 충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개최 및 전전한 생활체육으로 군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충남 서부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조성을 위한 「예산운동장 종합정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운동장(세부시설 포함) 변경</li> </ul>

## □ 참고사항

- 도시계획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검토의견

- 2003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충남도민체전에 따른 공설 운동장 종합정비 계획과 산업대학 진입로의 추가 확보로 인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기간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도민체전 준비와 병행하여 사후에 군민이 대다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 신설되는 중로 1~6호선의 도로에 대하여 도민체전 기간동안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마련되어 기존 시가지 교통혼잡이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 일부면적이 축소되는 광장( $146m^2$ )과 시설변경되는 공설운동장( $3,294m^2$ )의 면적 축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